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건의안 (최찬규 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9-655 |
|----------|-------|

제출년월일 : 2024. 12. 17.

발 의 자 : 최찬규, 박태순, 김재국,
한명훈, 박은정, 선현우,
최진호, 유재수, 황은화,
김진숙, 박은경, 현옥순,
이지화, 송바우나, 이해경
(15인)

1. 주 문

- “붙임” 건의안과 같음

2.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는 2024년 11월 11일 국가 및 시·도의 위임·위탁 사무를 처리하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음.
- 현재 시군구의회에서는 위임·위탁된 모든 사무에 대하여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결산 등 다양한 절차를 통해 감시·통제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의회가 시군구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시군구의회의 감사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며,

- 과도한 감사는 시군구의 행정력과 예산 낭비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행정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 이에 이번 개정안이 지방자치의 기본 정신과 지방시대 정책의 흐름에 역행하는 결정임을 인식하고, 지방자치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해당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함.

3. 참고사항

- 송부처 :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대한민국 국회(국회의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건의안

행정안전부는 2024년 11월 1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한 사무도 행정사무감사·조사 대상에 포함 되도록 예외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입법예고하였다.

현재 전국 시군구의회에서는 시군구의 사무에 대하여 예산 심의, 결산 심의는 물론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하여 집행부를 견제·감시해 오고 있으며, 이는 시도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무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진행되어 왔다.

그동안 위임사무에 대하여 시군구의회가 감사를 실시해 왔던 이유는,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시군구의회의 역할을 강화시켜 지방자치의 뿌리를 공고히 하고 진정한 지방시대의 개막을 가져오도록 하기 위함일 것이다 .

현재 시군구는 감사원감사, 정부합동감사, 시도종합감사, 시군자체감사, 시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국회 국정감사 등 과중한 감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시도의회의 감사까지 더해진다면 이는 행정력과 예산 낭비로 이어질 것이며, 일선 시군구 공무원은 업무 과다로 인한 질 낮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지역주민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시도의회가 시군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30여 년간 행정사무와 예산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해 온 시군구의회의 역할을 침범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과 예산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대한민국 어디서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고자 하는 정책 기조와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내용이며, 시군구의 자율권을 훼손하고 시군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축시켜 지방자치 발전을 방해하는 결정임에 틀림이 없다.

이에, 안산시의회는 진정한 지방자치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국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행정안전부는 시도의회가 시군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개정을 즉각 철회하라!

2024년 12월 일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